

# PET병과 라면용기 등 요율 재고 돼야

나근배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기획부장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되고 매립장 확보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환경처 공고 제 19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4조에 합성수지 용기가 제2종 지정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제10조에서 내부용량이 200CC 이상인 용기류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제품의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자 및 용기류를 수입 판매하는자는 지침이 정하는 표시방법의 절차에 따라 소비자, 사용자 또는 회수하는자가 쉽게 제품을 분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한

예치금 및 부담금을 분담토록 되어 있다.

플라스틱이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 인양 인식되어지고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예치금 부담금에서 자주 거론되어지고 있으나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과 현재 업계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1. 플라스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플라스틱은 목재, 금속, 고무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체 소재로써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관념을 가지고 볼 때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플라스틱은 ▲ 선진국을 비롯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용량이 증가

되고 있으며

▲ 가볍고 독성이 없어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되며

▲ 부식되지 않고 보온성, 방수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가정용에서부터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용도가 다양하며

▲ 사용후 재활용성이 좋고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 소각시 발열량이 높아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다시 에너지를 회수하여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 2. 사용후 관리가 중요

쓰레기를 매립 방법으로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플라스틱은 사용후 마구 버려져 눈에 많이 뜨이게 되었고, 썩지 않고 부피가 크다 보니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잘못 인식되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종이나 유리 등 여타 소재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서도 플

### 품목별 예치금 및 부담금 요율(금액)

| 예 치 금                         |                                      |                      | 부 담 금        |                |         |
|-------------------------------|--------------------------------------|----------------------|--------------|----------------|---------|
| 품 목                           | 종별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 품 목          | 종별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
|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자양강장, 변질제에 한한다) | 라. 패트병<br>○ 1,500ml이하<br>○ 1,500ml초과 | ○ 개당 10원<br>○ 개당 10원 | 용기라면<br>합성수지 | 합성수지용기<br>0.7% | 개당 50전  |

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등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유효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제품 생산자는 제품이 어떤 종류의 원료로 생산되었는지를 표기도록 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사용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제조자는 이들 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며, 소비자는 분리보관, 수거토록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는 이들 재활용제품들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 3. 업계의 부담 현황과 대응노력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이 사용후 재활용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1979년부터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에 의거 원료구입 시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 왔으며 81년도부터 11년동안 660 억원을 지불하였다.

이 자금은 주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비닐과 농약병의 수집처리에 사용하여 왔으며, 청주에 폐비닐 재생공장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이 합성수지 업계가 자기의 몫은 다하여 왔으나 왜 이렇게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있는지에 대하여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원료부분에서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플라스틱 업계는 이제 제품에서 또다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사항은 업계에서 재활용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PET병 재활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설립되어 발포스티로폼에 대한 회수처리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 4. 입법예고된 예치금과 부담금은 재고돼야

이와 같이 원료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활용을 위한 시설투자와 제반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입법예고된 품목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되어져야 할 것이다.

▲ PET병 : 500ml 이상~1,500ml 이하 / 개당 4원, 1,500ml 이상 / 개당 6원

▲ 라면용기 : 제외

요율의 조정은 업계에서 부담한 예치금과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업계가 부담한 비용이 이들 제품의 수집 처리비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업계는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업계가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 5. 업계의 새로운 인식 필요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의 일상 생활은 물론 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잠시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며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다고 보여진다. 소비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홍보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치 물이 흐르듯 제도가 정착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이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 정보능력을 가진 원료메이커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이루 어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불리한 상황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원료메이커들이 현재의 상황들을 다시한번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있기를 기대한다. ■

#### 연도별 합성수지 부담금 지불실적

| 연도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계      |
|-------------|-----|-------|-------|-------|-------|-------|-------|-------|-------|-------|--------|--------|--------|
| 금액<br>(백만원) | 666 | 1,231 | 2,261 | 3,319 | 3,401 | 3,825 | 4,705 | 7,301 | 7,603 | 9,423 | 11,409 | 11,473 | 66,617 |